

#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, 우리 시가 (재)푸른나무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3. 6. 30.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·육성,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#### ○ 추진의 필요성

-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·육성하는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,
-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
- 또한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
-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
-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
-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

-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
-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 사이트 관리 운영
- 그 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
- 시설규모 : 연면적 1,395.71㎡, 부지면적 529.6㎡ (지하1층, 지상5층)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일반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3.7.1. ~ 2026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578백만원('23년)
- 산출근거

- 인건비 1,121백만원, 사업비 102백만원, 물건비 145백만원, 경상  
이전 206백만원, 자본지출 4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# 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"위탁운영단체"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# 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,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.
-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고, 청소년시설의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재무·회계 규칙」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 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 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 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-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하고,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
-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  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   2. 위탁기간
   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  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 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 노력
   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   7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이은정(☎2133-4113)